

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9.

제 출 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(1994. 7. 6 대통령령 제 14317호)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액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2. 주요골자

-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시·도위원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
-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원의 국내·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『별표4』 『별표5』 『별표6』

4. 예산조치 : '94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